



수신 관내 건설현장 현장소장 귀하
(경유)

제목 흑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매년 흑서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알림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25.2월 흑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 안내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흑서기 사용가능 품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5.2.12.)	사용가능품목	비고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사용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 (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지청장



근로감독관 성연승 팀장 김성민 과장 유병규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감독과-1595 (2026. 5. 29.) 접수

우 31979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37, (잠홍동 770-9)

전화번호 041-661-5673

팩스번호 050-38803-0724

/ fhue2219@korea.kr

<https://www.moel.go.kr/local/seosan/index.do>

/ 대한민국 공개